

# 2014년 동춘1동 종합감사 결과

## 감사목적

- 행정기관의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예산집행, 사회복지, 주민등록 및 민방위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 공직기강 해이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시정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I

## 감사 개요

### ☐ 근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규칙
- 2014년도 감사·감찰 기본계획

### ☐ 감사기간 : 2014. 11. 25. ~ 11. 28. [4일간]

### ☐ 감사범위 : 2012. 11. 01일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 중점감사 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업무 절차의 적정성
- 주민센터 운영 및 통·반장 관리 분야
- 복지행정서비스의 법규(지침) 준수 여부 및 지원관리 실태
-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 처리 실태
- 민방위·공사분야 및 민원사무처리 실태

## II

## 감사 결과

### 1

### 총괄

#### ☐ 감사처분 내역

- 행정상 조치 ..... 총11건
  - 주의 ..... 총 08건
  - 시정 ..... 총 03건
- 재정상 조치 ..... 총04건
  - 추징 ..... 5천원/1건
  - 회수 ..... 13천원/1건
  - 환부 ..... 35천원/2건

#### ☐ 감사처분요구 목록

| 연번 | 분야     | 지적사항                     | 처분요구 |                       | 비고 |
|----|--------|--------------------------|------|-----------------------|----|
|    |        |                          | 행정상  | 재정상                   |    |
|    | 계      |                          | 12건  | 4건                    |    |
| 1  | 예산·회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주의   |                       |    |
| 2  | "      | 강사료 소득세 미징수              | 시정   | 회수( 13천원)             |    |
| 3  | "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부적정    | 주의   |                       |    |
| 4  |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위원 위촉절차 부적정          | 주의   |                       |    |
| 5  | 주민등록   |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업무 부적정       | 시정   | 환부( 25천원)             |    |
| 6  |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징수 부적정  | 시정   | 추징( 5천원)<br>환부( 10천원) |    |
| 7  | "      | 자동인증기관리 업무 소홀            | 주의   |                       |    |
| 8  | "      | 습득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 주의   |                       |    |
| 9  | 사회복지   |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 소홀           | 주의   |                       |    |
| 10 | 공사     | 시설공사(용역) 감독 및 준공업무 처리 소홀 | 주의   |                       |    |
| 11 | 민방위    |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 주의   |                       |    |

- 이번 동춘1동 종합감사는 예산회계,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등의 동행정 전반에 대해 총 11건의 부적정(또는 위법·부당) 업무처리 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3, 주의8), 재정상 조치(추징 5,000원/1건, 회수 13,000원/1건, 환부 35,000원/2건) 처분 요구함.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는 물론,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 III

## 주요 지적사항

## 1

## 예산 회계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별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의 격려품 지급대상은 소속 상근직원과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시책 또는 지역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 활동유공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업무추진 유관기관 등의 직무활동에 집행하도록 있다.
- 그러나, 동춘1동 주민센터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타 주민센터 부녀회 격려, 자원봉사자 격려를 위한 명절선물 구입, 전출직원 상품권 구입 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2****예산 회계****강사료 소득세 미징수**

○ 소득세법 제7조 및 제19조 등에 의거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 후 강사료를 지급 받는 자는 강사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동춘1동 주민센터에서는 강사료를 지출함에 있어 〇〇〇 외 2인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

**3****예산 회계****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거 급량비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의무적으로 적용 사용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동춘1동 주민센터에서는 급량비를 집행함에 있어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급량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4****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 위촉절차 부적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7조(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등) 제2항에서 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①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선정되거나 ②당해 동에 소재하는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주

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동춘1동 주민센터에서는 ◇◇◇◇ 외 4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이나 사회단체의 추천에 의하지 않고 본인의 신청에 의거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5

주민등록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업무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또는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경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금액의 3/4까지 경감 할 수 있으며,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제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자진 납부시 100분의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며,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로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동춘1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sup>1)</sup>중 손흥한

1)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중 자진신고(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하여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일제정리 기간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

등 5명에 대하여 주민등록증발급신청 지연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과태료 적용 착오로 과다 부과 하는 등 부적정하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환부 】

**6**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 · 징수 부적정**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용모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하는자에게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수납하는 수수료 등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 11월 1일부터 현행 주민등록증에 형광요소를 강화하여 위·변조 식별이 용이한 주민등록증으로 개선하여 발급한 것과 관련하여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강화에 따른 재발급처리지침(민원지적과-14707, 2006.11.01)」에 따라 기존증을 소지한 자가 개선된 증으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제4호 “재해의 발생 등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보아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동춘1동 주민센터에서는 용모변경의 사유로 증 재발급 신청한 □□□에 대해서는 수수료 5,000원을 무료로 하였으며, 반대로 주소변경란 부족 및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                           |
|---------------------------|---------------------------|---------------------------|
| ○ 2012. 3/4분기 09.03-11.02 | ○ 2012. 4/4분기 12.26-01.28 | ○ 2013. 1/4분기 02.01-03.29 |
| ○ 2013. 2/4분기 05.30-06.28 | ○ 2013. 3/4분기 09.02-09.30 | ○ 2013. 4/4분기 11.11-12.13 |
| ○ 2014. 상반기 02.27-04.30   | ○ 2014. 하반기 08.18-09.30   |                           |

보안기능추가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한 ☆☆☆, △△△에 대해서 기존증을 회수하였음에도 수수료 5,000원을 부과·징수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과·징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추징, 환부 】

7

주민등록

자동인증기 관리 업무 소홀

○ 연수구수입증지조례 제21조(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익금의 정산) 및 연수구자동인증기사용업무 처리지침의 수입금 정산(수입금 납부)의 규정에 의하면 계기사용에 따른 증지대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 까지 재무회계규칙 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수입금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고

○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인으로 소인하되 소인된 면을 원본으로 보관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동춘1동 주민센터에서는 2012. 11. 01 ~ 2014. 10. 31까지 각종 제증명 자동인증기 수입을 관리하면서 총 21회에 걸쳐 짧게는 1일, 길게는 4일이 지나 납입하였으며, 아울러 발급하지 못하여 결손처리한 제증명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제증명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결손 처리」 표시용 고무인 또는 X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고 관리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시·군·구로부터 이송되어 온 습득주민등록증은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재발급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하고,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수령안내 통지 후 1년간 찾아가지 않거나 주민등록증을 이미 재발급 받았거나 무단전출 또는 직권말소 또는 말소·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동춘1동 주민센터에서는 1년간 찾아가지 않은 ○○○의 장기미수령 습득증에 대하여 파기 처리 하지 않았고, ▽▽▽는 실제 습득증을 교부하였으나 습득증 처리대장에 수령일자 및 수령자의 날인을 누락하는 등 습득주민등록증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201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자 중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장애인의 장애인 복지카드(또는 장애인 등록증)는 물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하며,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소유차량이 아닌 동세대원 명의의 차량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할인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추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반납 받아야 한다.

○ 그러나 동춘1동에서는 보호자용(또는 본인용)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자 ※※※ 외 2명에 대해서 장애인 본인의 사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장애인자동차 표지(및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회수 및 폐기처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     |                          |
|----|-----|--------------------------|
| 10 | 공 사 | 시설공사(용역) 감독 및 준공업무 처리 소홀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감독공무원 지정을 통해 공사 진행 단계별로 수급자가 착·준공신고서 등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수급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동춘1동 주민센터에서는 발주된 공사를 감독함에 있어서 착·준공계 미접수, 감독공무원 미지정 및 준공검사(감독)조서 생략한 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담당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에 의거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10일, 총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교육 훈련 불참자 조치 등) 규정에 의거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사람 등 동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자들에 대하여는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제22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만일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면제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입국조회 등 자체확인후 면제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내부결재 등을 통하여 면제자 승인절차를 거쳐 면제자로 관리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그러나 동춘1동 주민센터에서는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만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음에도 2012~2014년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면제자에 대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3개월 이상 해외여행 및 체류 중인 불참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3개월 이상 출국자에 대하여 일괄 면제 자로 관리한 사실이 있다.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IV

## 행정사항

- ☐ 2014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 ☐ 아울러 지적된 사항 중 시정 건에 대해서는 처리전말보고서와 증빙 서류 (원본대조필)를 첨부하여 **2014.12.31.까지** 제출 - 동춘1동
- ☐ 감사결과 공개계획 『기획감사실-10639(2012.8.21)』에 따라 홈페이지 공개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 감사실

ㄹ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

### ※ 작성자 현황

| 부 서 | 직위(급) | 성 명   | 연락처      |
|-----|-------|-------|----------|
| 감사실 | 감사실장  | 이 민 철 | 749-7040 |
|     | 감사팀장  | 김 정 복 | 749-7121 |
|     | 담 당 자 | 손 세 동 | 749-7123 |